

「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8. 10. 27. 제정 판 (시행 2008. 9. 1.) → 2012. 11. 26. 개정 판 (시행 2012. 10. 1.)

바뀜 8 · 신설 1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76/compare?from=182&to=18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5:04:1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자격 및 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장애학생_지원센터장, 학생지원팀장, 해당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.	제3조(자격 및 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<u>자문교수</u> 등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2-11-26>
제4조(선임)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	제4조(선임)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_기간으로 한다.	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7조(서기)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. ② 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. ③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	제7조(서기)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. ② 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. <개정 2012-11-26> ③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'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"를 둔다. ② 위원은 학생지원팀장, 교수지원팀장, 시설관리과장, 장애학생 지원센터 실무담당자, 총학생회 복지부장,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.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가 된다.	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장(장애학생지원센터장)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은 교수지원팀장, 시설팀장,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-11-26> 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<u>학생지원팀장</u> ,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가 된다.
제9조(회의의 구성) 위원회 회의는 정기_회의와 임시_회의로 구분한다.	제9조(회의의 구성)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제11조(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_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,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,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_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.	제11조(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,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, 전

현 행	개 정 안
	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.
제12조(회의록 작성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	제12조(회의록 작성) ①_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_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13조(기타) <u>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</u>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 <신설</u> <u>2012-11-26>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자격 및 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자문교수 등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①위원장"을 "① 위원장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②위원"을 "② 위원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잔임 기간"을 "잔임기간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"①위원회"를 각각 "① 위원회"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②위원회"를 "② 위원회"로 하고, "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."를 "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. <개정 2012-11-26>"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③서기"를 "③ 서기"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장(장애학생지원센터장)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교수지원팀장, 시설팀장,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지원팀장,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가 된다.

제9조 중 "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"를 "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"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,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,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②회의록"을 "② 회의록"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기타)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

종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